

2017. 법원사무관 승진 공탁법 문제

【문11】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947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7 사무관)

- ①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문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변제공탁사건 중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이 공탁기록상 나타나는 사건에 한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 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공탁 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 ④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있다.

【해설】답3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47호, 시행 2013. 3. 20.]

1. 목적

이 예규는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되지 아니한 변제공탁사건과 재판상보증공탁사건 및 집행공탁사건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국고귀속 되는 공탁금을 줄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안내문의 발송

가. 대상 사건 및 대상자

- (1)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 및 만 4년 전인 해에 수리된 변제공탁사건 및 집행공탁사건(예: 2009년 4월에 통지할 사건은 2004년 및 2006년에 수리된 사건)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의 피공탁자
- (2) 직전 연도말 기준 만 2년 전 및 만 4년 전에 수리된 재판상 보증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의 공탁자
- (3)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의 유무는 상관없음.
- (4) 주소불명 또는 절대적 불확지가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나. 대상사건의 조사 및 안내문 발송 시기

매년 4. 1.부터 5. 31. 사이에 대상 사건에 대하여 발송대상자의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상으로 조회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다. 안내문 발송의 방법

변제공탁사건 및 집행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안내문을, 재판상 보증공탁 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2 양식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p>라.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p> <p>발송한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재발송할 필요가 있을 때(예 :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p> <p>마. 반송된 안내문의 처리</p> <p>발송한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이를 폐기한다.</p> <p>3.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p> <p>가.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나. (1)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되 공탁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p> <p>(2)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국고귀속 처리한다.</p> <p>(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후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p> <p>4.안내문 발송결과 보고</p> <p>공탁관은 매년 6. 30.까지 안내문 발송결과(총 발송 건수, 송달률, 안내문 발송 후 출급·회수한 사건 수 등)를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하여 소속 법원(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5.유의사항</p> <p>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p> <p>나. 안내문을 발송한 사건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문의 송달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p>
--

【문12】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 및 판례에 의함)(2017 사무관)

<p>(사례1) 사업시행자 甲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2억 원을 공탁하였다.</p> <p>(사례2) 甲이 확정판결에 따라 乙과 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p>
--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p> <p>ㄱ. (사례1) 수용대상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丙 중증은 피공탁자 乙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p> <p>ㄴ. (사례1) 수용대상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丙 중증은 피공탁자 乙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이를 통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p>
--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사례2) 乙과 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라. (사례2) 乙은 丙을 상대로 자신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해설】답2

(사례1) 종중이 피수용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시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수용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종원들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으로서의 직접 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명의수탁자인 위 종원들(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받거나 그들이 임의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공탁선례 제1-160호).

(사례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갑과 을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갑과 을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문13】공탁관이 지급인가 전에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공탁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7 사무관)

- ① 장기미제 공탁사건(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금전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공탁사건
- ②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③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한 절대적불확지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사건
- ④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

【해설】답4

①②③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절대적불확지 공탁에서 3년 경과된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의 경우에는 사전결제와 사후결제를 받아야 하지만 이자남 남아있는 사건은 사전결제는 요하지 않고 사후결제를 받는다.

【문14】반대급부조건부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 사무관)

- ①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공탁은 무효이다.
- ②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

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무효이다.

【해설】답2

- ①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그 채권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멸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431 판결)
- ②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
- ③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한 것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유효조건이므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 1-167호).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따라서 임차권등기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문15】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丙의 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액 : 3천만 원, 채무자 乙)을 송달받고, 甲은 채무전액(1억 원)을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7 사무관)

- ① 甲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 ② 乙은 7천만 원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고, 이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7천만 원에 대하여 민법 제489조에 기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丙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3천만 원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해설】답4

④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병은 집행법원의 배당에 의한 지급위탁절차로 지급받게 된다.

【문16】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절차 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7 사무관)

- ①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같음하여 청구서 등에 서명을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 ②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공탁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해설】답2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 12. 16. [행정예규 제1095호, 시행 2017. 1. 1.]</p>
<p>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p>
<p>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서등의 서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청구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 공탁관은 그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공탁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p>제4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탁관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공탁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이미 제출된 청구서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③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p>제5조(용도란의 기재)</p>

-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00지방법원 0000년 금 제000호 공탁금 출급 청구).
- ②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

-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문17】甲은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3천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甲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 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는 모두 개별사안임)(2017 사무관)

<보기>

- ㄱ.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甲이 공탁금회수제신청고서를 제출한 후 乙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
- ㄴ. 乙의 채권자 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얻어 공탁소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ㄷ.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가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 ㄹ. 甲이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변제기가 도래하자 위 채무를 공탁한 경우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해설】답1

- ㄱ.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공탁자는 회수를 할 수 있다.
- ㄴ. 공탁수락이 있으면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 ㄷ.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는 공탁수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
- ㄹ. 공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문18】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7 사무관)

- ①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에 적용한다.

- ②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의 집행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지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 ③ 공탁자 甲은 피공탁자 乙의 주소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소까지 가지 않고, 본인의 주소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스캔에 의한 원거리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공탁금 지급청구인이 개인이고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리인에 의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지급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다.

【해설】답2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19】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7 사무관)

-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②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후 합유자 중 1명이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 ④ 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甲이 수용개시일 전에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매각대금을 납부했다라도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답3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불확지 공탁사유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지 못한다.

② 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법 제2조제5호) 명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공탁자)가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후 합유자 중 2명이 공탁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잔존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01006-1호).

④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용개시일 이후에 대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출급할 수 있다.

【문20】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1천만 원을 공

탁하였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7 사무관)

- ① 공탁관은 피공탁자 乙이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더라도 乙에게 공탁금을 교부해서는 안된다.
- ② 피공탁자 乙은 피담보채권 발생에 관한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강제집행의 방법(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은 甲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에 의해서도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④ 본안에서 甲이 승소하였다면 甲의 채권자 丙은 집행권원을 얻어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甲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절차를 밟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해설】답1

- ①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청구서에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출급청구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 ② 담보권자는 질권실행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③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피공탁자는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별도의 확정판결 기타 집행권원을 얻어 공탁자가 갖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집행방법으로서는 집행권원에 기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공탁선례 제2-16호).